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조경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·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(법률 제21183호, '25.12.2. 공포, '26.6.3. 시행)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·조성 관련 행정집행 및 지원 주체에 시·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법 제7조,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

사는”으로, “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”를 “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)	제6조(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---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	③ <u>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</u> ----- -----.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<u>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</u> 하여야 한다.	④ <u>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</u> ----- <u>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</u> --- --.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	⑤ <u>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</u>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)	제7조(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)

① (생략)

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8조(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-----
-----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-----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---
---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-----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) ① 법 제7조,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-----

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 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법 제9조 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 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<u>관보에 고시하고 국 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 지사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관보 또는 공보에 고 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</u> 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85